

■ 사고 유형별 구비서류

※ 사이버/모바일/A-Tab/화상모바일/카카오톡 챗봇 보험금청구시 사본접수 가능합니다.(단, 사망 제외)

구분		구비서류	발급처	
공통	기본	①보험금청구서 ②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 ③청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		
	추가	동장사본 (사전 미등록 계좌인 경우) ※ (필요 시) 추가서류 1. 배우자, 자녀 등의 종피보험자 보장상품 : 주피보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등) 2.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: 친권확인을 위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3. 대리인 청구 시: 위임장,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,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 4. 재해사고 시: <재해 입증서류> 가). 교통사고: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, 손해보험사, 공제조합(버스, 화물, 택시 등) 사고사실확인서 나). 산업재해: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다). 군인재해사고: 공무상병인증서 라).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: 법원판결문 마). 기타 재해사고: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 사고사실확인서 바).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: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사). 자살: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5. 고객확인 주기가 도래한 경우: 고객확인서	은행, 증권사 서류별 상이	
사망	선택	①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원본 ②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사본(원본대조필) 및 기본증명서(사망사실 기재)	의료기관 및 주민센터 등	
	추가	※ (수익자 미지정시) 추가 요청서류 • 상속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(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) •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: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	주민센터 등	
장해	선택	후유장해진단서 (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진단서 및 추가서류)	의료기관	
	추가	※ (일반)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경우 • 만성신부전: 혈액투석(최초 혈액투석일, 환자상태 기재) • 사지절단(절단부위 명시): X-ray 판독결과지 • 인공관절치환술(치환일자, 부위 명시): 수술기록지 • 비장, 신장, 안구 적출(적출일자, 부위명시): 수술기록지 • 장기전절제(절제일자, 부위 명시): 수술기록지	의료기관	
진단	기본	공통 진단서(진단명, 질병분류 코드 포함)	의료기관	
	암	기본	조직검사결과지 • 백혈병: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결과지 • 뇌/폐/췌장암: 방사선 판독결과지(조직검사가 불가능한 경우) • 간: 방사선 판독결과지(조직검사가 불가능한 경우) 및 혈액검사 결과지 표적항암/특정항암호르몬/카티(CAR-T)항암 약물허가치료 • 표적항암/특정항암호르몬/CAR-T허가치료확인서(회사양식) (진단명,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여부,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, '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' 사용 여부) •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,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 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	의료기관
		뇌졸중	기본	CT, MRI 등 방사선 판독 결과지
	심근경색	기본	초진기록부, 각종 검사결과지(관상동맥조영술 결과지, 심전도결과지, 근효소 결과검사지, 심초음파결과지 등)	의료기관
	치매	기본	• 진단서(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진단) • CDR척도 검사 결과지 • MMSE-K 검사 결과지 • 치매상태가 90일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(결과기록지 등)	의료기관
	기타	기본	해당 질병에 따른 진단근거 서류(예: 말기간질환의 경우 MRI 또는 CT 판독결과지, 혈액검사결과지, 뇌파검사결과지 등)	의료기관

※ 사이버/모바일/A-Tab/화상모바일/카카오톡 챗봇 보험금청구시 사본접수 가능합니다.(단, 사망 제외)

구분		구비서류	발급처		
입원	선택	① 진단명(질병분류코드),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(병명 기재 필수, 예: 입·퇴원확인서) ② 진단서(입·퇴원기간 기재 필수)	의료기관		
통원	선택	① 진단명(질병분류코드), 통원일이 포함된 서류(예: 통원확인서) ② 진단서(통원일자 기재 필수)	의료기관		
응급실내원	기본	① 응급의학과 진료비계산서영수증(영수증 상 '응급관리료'항목 미확인 시 진료비세부내역서 추가)	의료기관		
수술	선택	① 진단명(질병분류코드), 수술명,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(예: 수술확인서) ② 진단서(수술명, 수술일자 기재 필수)	의료기관		
골절	선택	① 진단명(질병분류코드), 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(예: 의사소견서) ② 통원확인서, 입·퇴원확인서 + X-ray 판독결과지 ③ 진단서(골절부위 명시)	의료기관		
치아치료	기본	① 치아치료확인서, 치과진료기록 사본	의료기관		
아토피치료	기본	① 아토피 증명서	의료기관		
장기요양재가/ 시설급여지원	기본	병명이 기재된 진단서, 장기요양인정서(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),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,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, 진료기록부(검사기록지포함)	의료기관		
입원간병인 사용	기본	① 입원간병인 사용확인서(회사양식) ② 간병인 사용영수증(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, 사업자등록번호 포함하여야하며, 간이영수증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제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) ③ 사업자등록증 및 국제청 업종코드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함.)	의료기관		
실손	입원의료비	기본	진료비계산서(영수증), 진료비 세부내역서	의료기관	
		선택	① 진단서 ② 진단명(질병분류코드)·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(예: 입·퇴원확인서)	의료기관	
	외래실손	기본	① 진료비계산서(영수증): 일자별/진료과별 구분 제출 ② 2017년 4월이후 계약: 진료비 세부내역서(일자별/ 진료과별 구분 제출)	합산 청구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병명확인 서류를 생략하고 진료비계산 서(영수증)로 대체 가능. 의료기관에서 확인한 진단명을 청구서에 기재. 단, 산부인과, 향문외과, 비뇨기과, 피부과 등은 병명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함.반복 청구 시 병명확인서류 추가 요청 가능.	의료기관
		선택	① 진단서 ② 진단명(질병분류코드)·통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(예: 통원확인서, 처방전)		
처방조제	기본	① 약제비계산서: 일자별/진료과별 구분하여 제출 ② 병명확인서류: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	의료기관		

* 동 안내장은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기재한 것으로 사고내용, 특성, 상품(보장내역)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비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기타 자세한 내용은 ABL생명 홈페이지 (www.abllife.co.kr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고보험금 접수센터(☎ 1588-4404)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* 피보험자별 지급총액 10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시 사본으로 청구 가능하며 팩스 이용 가능합니다. 단, 모바일을 이용한 보험금청구FAX는 300만원 이하 이용 가능합니다.

* 실손 의료보험 통원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병원에서 질병분류기호(질병코드)가 기재된 처방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환자는 통원치료 후 병원에 질병분류기호(질병코드)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의료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은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이 처방전을 보험금 청구서 및 병원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받기 위해 병원 재방문 및 발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없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* 의료기관관련 서류별 발급비용은 해당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(www.hira.or.kr) 홈페이지(병원·약국·비급여진료비정보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 주민센터발급 서류는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사이트 민원24시(www.minwon.go.kr)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
[상속인 표준 제출서류]

구분	유형	제출서류	제출사유	비고
필수 서류	공통	내점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	상속인 본인 여부 확인	
	공통	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상속인 범위 ^{주1)} 확인	
	공통	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	피상속인의 사망사실·시기 확인	
	미내점 상속인	위임장^{주2)} 및 인감증명서 등^{주3)}	미내점 상속인의 의사확인	내점 상속인의 경우 본인의사 확인이 가능하므로 인 감증명서 등 제출 생략
필요시 제출 서류	공통	피상속인의 제적등본	추가 상속인 존부 및 `08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 범위 확인	① 청구인의 3,4순위 상속인인 경우 ② 대습상속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③ 사망자가 `08년 이전 사망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
	공통	피상속인의 사망확인(진단) 서	피상속인의 사망사실·시기 확인	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에 제출
	유언 상속 · 유증	수유자의 인감증명서, 유언에 관한 증서	유언에 의한 상속분 등 확인	(유언방식)자필증서, 공정증서, 비밀증서, 구수증서 또는 녹음 중 한가지
		법원의 유언서 검인조서 등본	유언서의 유효성 확인	유언방식이 공정증서인 경우 제출 생략
	미성년자 상속인	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	제한능력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범위 확인	상속인 중에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이 있는 경우 ※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관계서류(미내 점시)제출 필요
	피성년 후견인 등 상속인	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		
	해외 거주자 상속인	실명확인증표, 위임장(영사확인 등) ^{주4)}	대리관계 및 미내점 해외거주자 상속인의 의사 확인	해외거주자 상속인 동일여부 확인을 위해 동일인증명 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
		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	상속내역 확인	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(「국세기본법」82⑥)
	협의분할	재산분할협의서 또는 법원의 재산분할결정서	재산분할 내용 확인	협의분할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
상속포기	법원의 상속포기결정문	판결내용 확인	상속포기 판결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	

- 1) 피상속인 기준 부모, 배우자, 자녀(상속 1, 2순위)까지 확인 가능
- 2)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일치하는 서명 기재
- 3) 인감증명서(3개월 이내 발급분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3개월 이내 발급분) 등
- 4) 외국어로 표기된 문서의 경우 상속인이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